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 - 44
------	---------

제출년월일 : 2016. .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근거법령의 변경 및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근거 법령을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안 제1조)
- 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정의 되어 있는 용어를 반영하여 직무발명에 필요한 용어("구유특허권", "처분", "처분수입금")를 추가 신설(안 제2조)
- 다.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맞게 개정(안 제15조, 안 제16조)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참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6. 4. 28. ~ 5. 18. (제출된 의견 없음)
- 2)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권고안 반영
- 4)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5)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6)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의”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을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자의”를 “사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유발명”이라 함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를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발명자”라 함은”을 ““발명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이하 “특허”

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 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공통"을 "공동"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구청장"을 "서울특별 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중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후가아니 면"을 "후가 아니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또는 발

명자명의”를 “또는 발명자 명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라”로, “지체없이 심의”를 “지체 없이 심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3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을 마친후”를 “제12조에 따른 특허등록을 마친 후”로 한다.

제14조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에 따라”로, “등록 보상금”을 “등록보상금”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를 “매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만원”을 “3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디자인권은 20만원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7조 중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및 제16조에 따른”으로, “2인 이상일”을 “2명 이상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을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또는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 단서 중 “모인에 의하여”를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속여”로 한다.

제20조 중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위원10인”을 “위원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중에 서”를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및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위원회의 의사등)”을 “(위원회의 의사 등)”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26조 중 “운영에 관한”을 “운영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직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15조 내지 제19조 및 제28조 내지 제30조”를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비밀보지)”를 “(비밀유지)”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직무발명상황보고)”를 “(직무발명 상황보고)”로 하고, 제30조 중 “지식경제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로 한다.

제31조를 제32조로 하고,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종전의 제3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u> <u>보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틀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공무 	<p><u>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u> <u>직무발명 보상 조례</u></p> <p>제1조(목적) -----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 ----- ----- -----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 -----.</p> <p>제2조(정의) ----- ----- 각 호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사람의 ----- ----- ----- ----- -----.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

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

3. "발명자"란 -----
-----.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이하 "특허"라 한다)
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
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
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
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
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

<신 설>

	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구승계) ① (생략)	제3조(권리의 구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u>공통</u> 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②----- ----- <u>공동</u> ----- ----- -----.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u>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u>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 - <u>제3조에 따라</u> ----- ----- ----- -----.
제5조(보상금의 관장) <u>제4조의 규정에 의한</u>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u>구청장</u> 이 이를 관장한다.	제5조(보상금의 관장) <u>제4조에 따른</u> ----- -----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u>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u>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u>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발명의 신고) ----- <u>직무발명</u> ----- ----- -----.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u>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u>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및 <u>제10조제2항에 따른</u> ----- ----- ----- -----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 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 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

② ----- 제1항에 따른 -----

-----.

제8조(권리의 양도) -----

----- 지체 없이 -----
-----.

제9조(출원) ① 제8조에 따라 -----

----- 지체 없이 -----

-----.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

-----.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
----- 제7조에 따라 -----

----- 후가 아니면 -----

----- 해당 -----

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방재정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 또는 발명자 명의-----

②----- 단서에 따라 -----

----- 제6조-----

제11조(심의요청) ①----- 제9

조에 따른 -----

----- 제20조에 따라 -----

----- 지체 없이 심의
를 -----

②----- 제1항에 따라 -----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조에 따라 지체 없이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

----- 제12조에 따른 특허등록
을 마친 후 -----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10만원
2. 실용신안권은 5만원
3. 의장권은 3만원

<신 설>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유상으로 구소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제14조(등록보상금의 지급) -----
----- 제15조에 따라 -----
----- 등록보상금 -----.

제15조(등록보상금) ①-----

----- 매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 -----
-----.

1. ----- 50만원
2. ----- 30만원
3. 디자인권은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양
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
에 해당하는 액

2.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
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
는 실시료 - 1,000만원) × 20/
100+30만원

3. 구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
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
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
000만원) × 10/100 + 210만원

② 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
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
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삭 제>

<삭 제>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
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
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
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
야 한다.

제17조(보상금의 지분지급) -----
----- 및 제16조에 따른 -----

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 2명 이상일 -----

제18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전액 지급
한다.

② (생략)

제19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
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
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
----- 또는 제16조에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보상금의 불반환) -----

-----.
-----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속여 -----
-----.

제20조(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
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공무원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설치) -----
-----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
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 10명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
은 기획경제국장이, 위원은 심
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종에서

②-----

----- 사람 중에서

<p>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가 된다.</p>	<p>----- -----.</p>
<p>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p>	<p>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 -----.</p>
<p>1. <u>제11조의 규정에 의한</u> 직무 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 한 사항</p>	<p>1. <u>제11조에 따른</u> ----- ----- -----</p>
<p>2. <u>제27조의 규정에 의한</u> 자유 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 한 사항</p>	<p>2. <u>제27조에 따른</u> ----- ----- -----</p>
<p>3. <u>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u> 사항</p>	<p>3. ----- 및 <u>제16조에 따른</u> ----- -----</p>
<p>4. (생 략) 5. 기타 필요한 사항</p>	<p>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p>
<p>제24조(위원회의 의사등) ① ~ ③ (생 략) ④ ~ ⑤ <신 설></p>	<p>제24조(위원회의 의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 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 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 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 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 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한 준용) 이 조례는 직무에 관
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15조(등록보상금)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은 50만원
2. 실용신안권은 30만원
3. 디자인권은 2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종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제15조(등록보상금)’ 및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은 소액으로 추정되어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허만
연 락 처	02-3153-8542